

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12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 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처분

《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》

- 사업기간 : 2012. 4. ~ 12.
- 위 치 :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-1번지 일원
- 매각재산 : 토지 5필지 70,909m² 2,269백만원(예비감정가)

(단위 : m², 천원)

연번	소재지	지목	면적	추정가격	비고
소계	5 필지		70,909	2,269,088	
1	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-1	임야	62,479	1,999,328	
2	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88	답	893	28,576	
3	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99-2	답	4,730	151,360	
4	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-1	전	1,210	38,720	
5	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-2	전	1,597	51,104	

○ 매수업체 : (주)다현코리아 등 3개사

4. 검토의견

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여건이 취약하여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인 보은군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2009년도에 도유재산으로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(주)다현코리아 등 3개사로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 25-1번지 외 4필지 70,909m²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2009년도 매수가 9억 3,167만원의 토지를 22억 6,908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부. 끝.